##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609

발의연월일: 2025. 4. 7.

발 의 자:김태선·김병주·김영환

윤준병 • 정준호 • 김영배

허 영・위성락・장철민

박홍배・김주영・박 정

이학영 • 박균택 • 윤종군

의원(15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하고 보호가 필요하거나 서식지의 훼손이 우려되는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그러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특성상 개체수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보전·보호 측면에서 조사 결과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호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. 최근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산양 1천여 마리가 폭설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울타리에 갇혀 때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들 개체수의 변동과 서식지 환경 특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.

이에 현행 제6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해당 종의 서식 환경, 개체수 변동 추이 및 감소 원인 등의 조사

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멸종위기 야생생 물의 멸종을 막고 체계적으로 보호·관리하려는 것입니다(안 제6조제2 항).

#### 법률 제 호

###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해당 종의 서식 환경, 개체수 변동 추이 및 감소 원인 등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
제6조(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	제6조(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	
조사) ① (생 략)	조사) ① (현행과 같음)	
② 환경부장관은 보호하거나	②	
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		
및 그 서식지 등이 자연적 또		
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하여 훼		
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		
시로 실태조사를 하거나 관찰		
종을 지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.		
<u>&lt;후단 신설&gt;</u>	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	
	해서는 해당 종의 서식 환경,	
	개체수 변동 추이 및 감소 원	
	인 등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	
	<u>야 한다.</u>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